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공사·공단 직원 결격사유 등 명시〉

■ 이상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19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개정안의 검토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상식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14.
3. 회부연월일 : 2024. 8.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공공성이 중시되는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0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현행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 규정 외에 “직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규정도 추가로 명시 하려는 것임.(안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u>없다</u> .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 ----- ----- <u>없으며, 제3호</u> <u>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u> <u>될 수 없다.</u>
1. 삭제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 ²⁾ 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 5. (현행과 같음)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u>임원</u> 이 퇴직 전에 관련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③ 공사의 직원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 <u>임직원</u> ----- ----- -----.

현행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사의 직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3. 제78조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1. 제78조의2제3항에 의한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2. 개정안의 검토

결격사유란 특정 신분이나 자격, 인허가 등을 취득하는데 제한이 되는 사유로서,³⁾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행정기본법」⁴⁾은 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결격사유와 연동된 당연퇴직, 자격박탈, 인허가 등의 취소 규정 또한 해당 신분·자격·인허가 등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라는 점에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⁵⁾상 법률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공사·공단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규정은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반면, 직원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여 대부분의 지방공사·공단이 이를 정관 또는 하위규정으로 정하고 있음.⁶⁾

3)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p.366.

4) 「행정기본법」

제16조(결격사유)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5)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6) 구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소관 46개 지방공사·공단 중 조사가 가능한 35개 기관 전체가 직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정관의 위임을 받아 인사규정 등 하위 규정으로 이를 정하고 있음(2023년말 기준).

[광역자치단체 공사·공단 직원 결격사유 규정 사례]

소속	구분	기관명	결격사유 유형					
			지방 공무원 결격사유	병역 기피자 등	비위 면직자 등	채용 비리자 등	피한정 후견인	미 성년자
서울	공사	서울교통공사	○	○	○		○	
		서울주택도시공사	○	○	○	○	○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	○	○	○			
		서울에너지공사	○		○		○	
	공단	서울시설공단	○	○	○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	○		○	
부산	공사	부산교통공사	△	○	○	○		
		부산도시공사	조 사 불 가					
		부산관광공사	△	○	○	○		
	공단	부산시설공단	△	○	○	○	○	
		부산환경공단	△		○		○	
대구	공사	대구교통공사	△	○	○		○	
		대구도시개발공사	조 사 불 가					
	공단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	○	○	
인천	공사	인천교통공사	△		○	○	○	
		인천도시공사	조 사 불 가					
		인천관광공사	△		○		○	
	공단	인천시설공단	△	○	○		○	
		인천환경공단	△	○	○		○	
광주	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조 사 불 가					
		김대중컨벤션센터	조 사 불 가					
	공단	광주환경공단	조 사 불 가					
대전	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	○	○		○	
		대전도시공사	△				○	
		대전관광공사	△	○			○	
	공단	대전시시설관리공단	△	○	○		○	
울산	공사	울산도시공사	조 사 불 가					
	공단	울산시설공단	△	○	○		○	
세종	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		○	○	○	
	공단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		○	○	○	
경기	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	○	○		○	
		경기관광공사	조 사 불 가					
		경기평택항만공사	△				○	
		경기교통공사	△	○	○		○	
강원	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조 사 불 가					
충북	공사	충북개발공사	조 사 불 가					
충남	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조 사 불 가					
전북	공사	전북개발공사	△	○			○	
전남	공사	전남개발공사	△	○	○		○	

소속	구분	기관명	결격사유 유형					
			지방 공무원 결격사유	병역 기피자 등	비위 면직자 등	채용 비리자 등	피한정 후견인	미 성년자
경북	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조 사 불 가					
		경상북도관광공사	△	○	○		○	
경남	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	○	○	○		○	
제주	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	○			
		제주관광공사	△		○		○	
		제주에너지공사	△	○			○	

- 주 1) 지방공무원 결격사유의 “△”는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의 일부만 규정한 사례
 2) “조사불가”는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클린아이) 홈페이지에 규정 전문이 아닌 최근 개정문만
 공시하여 결격사유 규정 전체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
 3) 상기 표의 “결격사유 유형” 외의 기타 유형도 있음 참고 필요

이에 개정안과 같이 지방공사·공단 직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임.

첫째,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도록 법체계를 개선하는 것으로서, 지방
 공사·공단의 직원 채용시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둘째, 현재 개별 지방공사·공단마다 직원 결격사유를 따로 정하면서
 일부 중요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대부분의 지방공사·
 공단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결격사유⁷⁾를 참고하여 직원

7)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2022년 12월 27일 같은 법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결격사유에 추가된 “정보통신망 이용 음란영상 배포 등 범죄자”(「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3나목) 및 “스토킹 범죄자”(같은 호 다목)는 2023년말까지 대부분의 지방공사·공단이 반영하지 않았음.⁸⁾ 이에 개정안과 같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결격사유를 지방공사·공단 직원의 결격사유로 일괄 규정하면 향후 이러한 누락을 방지하고 기관 간 통일성도 확보할 수 있음.⁹⁾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공단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직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데 찬성하고 있으며,

추가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직원 채용시 경찰에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¹⁰⁾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2023년 8월말 현재, 광역자치단체 소관 지방공사·공단 46개 중 조사가 가능한 35개 공사·공단 가운데, 10개만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나머지 25개는 반영하지 않고 있음.

9) 참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공공기관도 임원 외에 직원의 결격사유는 법률에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개정안도 제출되어 있지 않음.

10) 구체적으로 조문 마지막에 “⑥ 공사의 사장은 임직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요청 입법례]

근거규정	요청기관	요청목적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2항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대회관계자·성화봉송주자 결격사유 확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문화재청장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결격사유 확인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6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 운영위원 결격사유 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문 의 처

02)6788-5333